

# [ 서울전세버스 운송약관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운송약관 (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라 함은 사업자와 여객대표 간에 협의 약정한 전세버스요금을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전세버스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여객대표 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3. 수화물이란 여객이 소지하는 물품으로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내 반입이 제한된 물품이외의 휴대수화물을 말한다.
4. 승무원은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운수종 사자를 말한다.

제 3 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여객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속조합원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이 관계법규와 저촉 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여객의 동의) 여객은 사업자와 문서,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조(개 시) 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운송약관 등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발시간 (왕복 운행 시 돌아올 때의 출발시간을 포함한다)

2. 승차 및 출발장소, 행선지, 운행거리 및 경로, 운행종료장소
3. 버스차종과 승차 정원
4. 운송요금  
②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20분지연됨은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
5.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제 2 장 계 약 및 운 임

- 제 8 조(계약) ① 사업자는 여객의 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 전자문서 등을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징구한다. 다만, 시간상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발행을 생략키로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여객은 승차 시 계약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제 9 조(계약의 조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
2. 차내 질서유지 책임자를 여객중에서 선정 차내질서를 유지하는 조건
3. 버스주행 외에 여객과 승무원 동행 관광 또는 여가활용금지조건
4. 2시간 연속운행 후 15분이상 휴식보장,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3시간 운행한 경우 30분 이상 휴식보장 조건
5.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의 제한조건
6. 여객의 질서학립과 안전운행을 위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조건
7. 숙박운행 및 파견근무 등 승무원의 당일운행 종료시간부터 다음날 운행시작시간까지 법정 휴게시간 및 숙식보장 조건
8. 기타 안전운행과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조건

- 제 10 조(계약서의 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2. 운송구간 (승차 및 출발장소, 운행거리 및 경로, 운행종료장소 포함)
3. 사용일시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포함)

4. 운임총액, 계약금 잔액
5. 버스차종과 승차정원
6. 여객의 준수사항
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
8. 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1 조(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자에게 완불함으로서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②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여객이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임은 승무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없다. 다만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 조(계약의 취소) ①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버스사용일시 도래 72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72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일시의 **48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10**
2. 사용일시의 **48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3.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 없이 버스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30**

제 13 조(운송의 취소)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파업, 일기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운송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제 3 장 여 객

제 14 조(여객에 의한 계약변경) ①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이행이 불가능

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 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쌍방이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계약변경으로 운행거리나 소요시간이 증감되는 등 사업자 및 여객에게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이 원만한 협의를 거쳐 운임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여객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게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운행 중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복도를 배회하는 행위

2.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차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4.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투기하는 행위

5. 승무원의 승낙 없이 차량의 기계장치, 비상구, 적재함 등을 조작하는 행위

6. 운행 중에 출입문을 개폐하는 행위

7. 다른 승객을 상대로 기부요구, 물품판매 등을 하는 행위

8. 소화기, 안전망치 등 안전장비를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행위

9. 노래방기기 설치 및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

10.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11. 기타 승무원의 여객 안전과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②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1.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을 제외한다)

3.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4.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5. 취사도구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 16 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간호인이 없는 중증병자나 전염병 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여객이 버스 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 각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약관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 17 조(운송의 책임) ①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작과 종료는 계약내용에 따라 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로 한다.
- ②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승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운송 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차내 안전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안내문을 게시한다.
- ⑥ 차내 청결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한다.
- ⑦ 승무원은 차량 출발 전 안전관련 안내 또는 시청각자료를 승객들에게 방송하도록 한다.

- 제 18 조(여객의 책임) ①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버스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여객은 차내 반입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휴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
- ③ 여객은 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 제 19 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3. 운행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여객이 약관 및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 제 4 장 수 화 물

- 제 20 조(수화물) 사업자는 휴대수화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 제 21 조(수화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 휴대화물의 1인당 허용 중량은 15Kg 이하로 하고, 부피

는 가로46cm, 세로 77cm, 폭 35cm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22 조(보관책임 및 내용조사) ① 사업자는 여객이 휴대하는 수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은 사절하며 수화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전운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물의 내용을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조사 할 수 있다.

제 23 조(시행일) 이 약관은 여객자동차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약관은 200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약관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